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 제2016 - 10호

검단4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보안 및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27.

인천광역시 서구검단4동장



청사보안 CCTV 설치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검단4동 복합청사 보안 및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서구 (검단4동) 홈페이지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 1. 27. ~ 2016. 2. 17. (22일간)

5. 설치장소 : 검단4동 주민센터 1층 민원실 출입구 앞



연번	이름(장소)	설치대수	주 소	비고
1	검단4동주민센터 1층 민원실 출입구 앞	2대	인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 (당하동)	

6. 의견제출

○ 검단4동 복합청사 보안용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6. 2.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4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법용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2-560-2850)

라. 우편 : 우)22677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주민센터(560-3362)

